
입당원서 세부처리 지침 안내

2023.05.09.(화)

1 시·도당 입당원서 세부처리 지침

□ 시·도당 입당원서 세부처리지침

- 입당은 당규 제2호(당원및당비규정) 제8조(입당절차)에 의거,
 -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당원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
 - 본인작성 입당원서 : 방문, 우편, 팩스 전송으로 개별 제출

- 지역위원회 포함 대리인을 통해 입당원서 접수시
 -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
 - 100매 이하만 입당원서 접수 가능
 - 대리인 접수 시한 : 2023년 7월 14일(금)까지(시한 후 → 개별 제출만 인정)
 - 반려원서 수정제출 시한 : 2023년 7월 31일(월)까지(반려 입당원서 첨부 제출)
 - 제출한 입당원서에 추천인 모두 기재
 - 입당원서 접수 시 접수증명서(첨부1) 작성, 접수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
 - 5인 이상 동일 주소 접수시 거주지(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 증빙 자료 집중 사전 점검 (사후에라도 적발시 입당절차 중단, 접수후 처리)

- 기존당원 입당원서 접수시
 - 주소 변경 :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시 전적으로 보아 거주지 증빙 자료 수령 필수
 - 연락처 변경 : 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정 전 본인확인 필수
 - 당비납부 정보 변경 등 : 당원정보 수정 후 확인용 고지 필수

2 위법한 입당원서 작성 및 제출 사례

구분	내용	저촉 법령
입당원서 임의 작성	가족 또는 지인 등이 입당신청자 <u>본인 동의 없이</u> <u>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(서명 위조)하여 접수하</u> <u>는 행위</u>	정당법 제42조(강제입당 등의 금지), 형법 제231 조(사문서 등의 위조, 변 조), 제234조(위조사문서 등의 행사), 주민등록법 제37조(벌칙) 및 개인정 보보호법 등 저촉
회사, 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	회사의 직원, 노동조합원에게 <u>강압적으로 입당원</u> <u>서를 작성토록 하여 접수하는 행위</u>	공직선거법 제113~115 조(기부행위 제한), 정당 법 제31조(당비) 저촉
당비 대납	입당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였으나, <u>당비를 대납하</u> <u>여 권리당원의 자격을 얻게 하는 행위</u>	공직선거법 제113~115 조(기부행위 제한), 정당 법 제31조(당비) 저촉
주소지 허위 기재	거주지가 아닌 <u>다른 주소지(선거구)를 입당, 전적</u> <u>원서에 기재해</u> 추후 특정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위	형법 제231조(사문서 등 의 위조, 변조), 제234조 (위조사문서등의 행사), 형법 제314조(위계에 의 한 업무방해죄)

※ 이 외 상습적으로 불법 작성된 입당원서를 제출할 경우,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 있음

3 위법 작성된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제재

□ 위법하게 작성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

- 위법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입당원서 추천인 및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당원서 접수 즉시 중단, 전수조사
- 위법사실(서명 위조 등) 확인될 경우, 해당 출마예정자 및 입당원서 대리 작성인 당 윤리심판원 제소, 중앙당 보고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
- 위법내용 확인 시 관련된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 추진

□ 제출된 입당원서(복당원서, 전적원 등)에서 주소지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

- 해당 입당원서 추천인 및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당원서 등의 접수를 즉각 중단하고 전수 조사
- 우편물 발송 등 기타 방법을 통해 주소지 확인 (필요시 신규 입당자 주소지 전수 조사)
- 입당이 허가된 경우라도 입당신청자의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·도 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주소 등 허위기재 여부를 심사 후 비당원 판정

□ 시도당 입당처리 기간 종료후 (8월 이후)

- 중앙당 차원 조치 : 위법 사항 제보 혹은 적발되거나,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 혹은 전체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예정
- 위법사항 확인시 징계절차 진행 및 해당 인사 공천심사시 불이익 명문화 추진

-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,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입당원서 제출, 주소지 허위 기재 등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.

- 이에, 입당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,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